

#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

강 동 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(02-958-4076)

□ **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**

- 과거 자의적이었던 업종별 수수료의 영향과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력에 의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되고 있음.
- 그 결과, 업종별 수수료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협상력에 따라 동일 업종내 유사 규모의 가맹점간 수수료율이 상이

## [참고]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결여 사례

	사례 1		사례 2		사례 3	
	상이업종 / 유사패턴		동일업종 / 유사패턴		동일업종 / 상이패턴	
	A	B	C	D	E	F
업종	의원	스포츠 레저용품	일반음식점	일반음식점	슈퍼마켓	슈퍼마켓
거래규모 <sup>1)</sup>	1,022만원	1,023만원	1,785만원	1,787만원	2900만원	840만원
결제건수 <sup>1)</sup>	132	139	101건	104건	145건	683건
수수료율	2.52%	3.34%	2.66%	3.90%	2.00%	2.00%
수수료 격차	0.82%p		1.24%p		0%p	

1) 2012년 1월 중 신용카드 거래 기준

□ **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의 기본 원칙**

- ① 합리성 제고: 비용합리성에 기초한 보편적 기준을 적용
  - 카드사의 원가와 가맹점의 비용유발효과를 고려하여 수수료 산식을 마련
  - 가맹점별 비용은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등 정량적 변수를 기본으로 대손위험, 환불위험, 대면거래여부, 거래승인시간 등 가맹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

② 공정성 제고: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력 불균등을 시정하여 공정한 경쟁 토대 마련

- 법적인 제약(의무수납제도, 가격차별금지제도 등)으로 인하여 수수료체계가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 발생
- 근본적으로 합리성을 저해하는 법적 제약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,
- 제도 개선 이전에 단기적으로 소액카드결제에 대하여 실비 이하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

### □ 가맹점 수수료의 산식 (예시)

○ 수수료율 = 기본수수료율 + 부가서비스수수료율 + 조정수수료율 + 마진

- 기본수수료율 = 건당고정비용/평균거래금액 + 거래금액당 원가율

\* 건당고정비용: VAN프로세싱비 등 개별거래와 관련된 비용

\* 거래금액당 원가율: 자금조달비용, 일반관리비, 대손비용, 공동 마케팅비용 등 거래금액과 연동된 비용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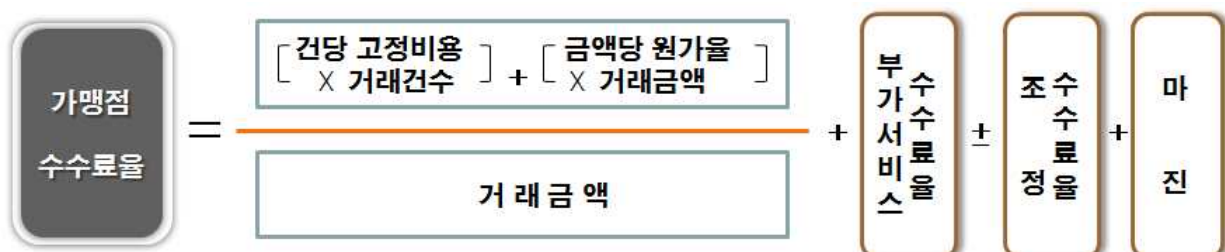
- 부가서비스수수료율: 가맹점별 마케팅비용 등

- 조정수수료율: 매출액, 거래건수 이외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수료율을 조정

- 마진: 카드사의 일정수준 마진 산입

○ 개별 카드사는 자신의 원가구조와 영업 전략에 따라 상이한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하여 가맹점과 계약

### [참고] 수수료율 산식의 예시



## □ 시뮬레이션 방법

### ○ 표본 추출

- 2012년 1월 중 승인실적이 있는 약 168만개 가맹점 중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51만개 가맹점 중에서 무작위로 9,964개를 추출

\* 체크카드, 법인카드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의 평균 수수료율 2.09%

### ○ 카드사 비용에 대한 가정

- 건당고정비용: 거래건수가 증가할수록 낮은 고정비용을 적용
  - \* 125원(거래건수 하위 70%) → 100원 (70~90%) → 75원 (90~100%)
- 총원가율 = 1.80%
  - \* 거래금액당원가율 + 마진 = 1.60%
  - \* 개별마케팅비용 = 0.20% (단, 거래규모 하위 80% 가맹점은 미적용)
  - \* 가맹점별 정성적 특성을 반영한 조정수수료율은 미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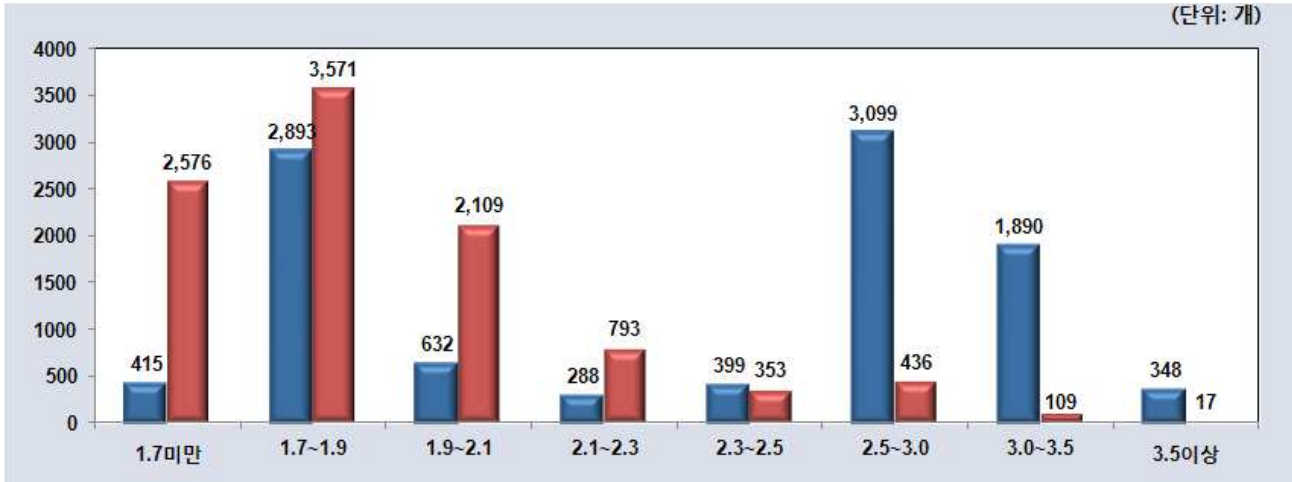
## □ 시뮬레이션 결과

### ① 수수료율의 하락 및 격차 축소

- 평균: 2.09% → 1.91%로 0.18%p 하락
- 표준편차: 0.56% → 0.14%로 하락
- 전체 82.6%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.6%~2.1%에 위치
- 상승 가맹점 비율: 24.5%; 하락 가맹점 비율: 75.5%

※현재의 무원칙적인 수수료체계에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

## [그림] 가맹점 수수료율 분포



### ②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하락

- 월 카드매출규모 1천만~1억원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하락이 두드러짐(평균 2.68%→1.88%로 80bp 하락). 동 구간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가맹점의 비율도 11.6%에 불과
- 대형가맹점(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)의 평균수수료율이 소폭 상승(1.89%→1.90%)하는 가운데, 대형가맹점의 71.1%가 수수료율 인상을 경험

### ③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작은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크게 나타남.

- 건당 1만원 미만: 2.42%→2.86%로 0.44%p 상승
- 건당 100만~200만원: 2.96%→1.75%로 1.21%p 하락
- 소액결제 가맹점의 경우 총수수료 중 VAN수수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

### ④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하지만, 슈퍼마켓, 편의점, 대형할인점 등에서 수수료율이 상승

- 편의점(평균결제액 원): 2.33→2.76%로 0.43%p 상승
- 대형할인점: 1.66%→1.95%로 0.29%p 상승

※슈퍼마켓, 할인점 등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

## □ 본 수수료체계의 특징 및 기대효과

- 합리성에 근거한 수수료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카드사와 가맹점간 마찰 감축
  - 비용합리성을 계량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에 기초하여 수수료율을 산출
- 가맹점 수수료율이 전반적인 하락하는 가운데,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격차가 축소
  - 수수료율 하락요인: 불필요한 마케팅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수료율이 인하
  - 격차 축소요인: 가맹점의 업종과 규모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차이의 합리적 사유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
    - \* 가맹점간 격차는 거래건수, 평균결제금액, 거래패턴의 정성적 특성 등에 기인할 뿐 전체 80% 이상 비용의 차등적용 사유 부재

## □ 본 수수료체계의 문제점 및 보완책

-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높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수수료율이 크게 상승
  - 가맹점이 소액결제를 취급하는 것은 의무수납제도, 가격차별 금지제도 등 법적 제약 때문임.
- 법적 제약에 따른 불합리성을 시정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에 부합
  -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하여 결제건당 고정비용을 낮게 적용
  - 근본적으로 의무수납, 가격차별금지 등 제도를 조기에 시정
    - \*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

## □ 기타 금융감독 및 법적 쟁점

### ○ 유관기관의 역할

- 금융위 :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 제시
- 카드사: 카드사별로 수수료 산정 모형 개발 및 약관 마련
- 금감원: 카드사별 수수료 산정 모형 감독 및 검사기법 개발
- 협회: 카드사별 수수료율 비교 공시시스템 마련을 통해 투명성 제고

### ○ 우대수수료율 적용

- 개정 여전법에 따라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입법취지를 존중하되, 개별 카드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설정할 필요

\* ① 카드사의 최소원가를 고려하고 ② 단일한 우대수수료율을 지정하기 보다는 우대수수료율의 상한 또는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

- 공익성이 분명한 업종(대중교통), 매출액 대비 세금비중이 높은 업종(주유소)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

### ○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

- 본 수수료체계를 적용할 경우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지만,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